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12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 한준호 · 박상혁 · 전현희

허종식 • 이연희 • 이건태

민홍철 · 강유정 · 한민수

박용갑 • 조승래 • 박지혜

김민석 • 민형배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법 문헌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학설도 나뉘고 있어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휴대'가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8조의2제1항 중 "휴대"를 "휴대(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	
험한 물건을 <u>휴대</u> 하여 제257조	<u>휴</u> 대(소지 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u>이하 같다)</u>
징역에 처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